[별지 제21호의10서식] <신설 2020. 11. 27.>

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3일

신청인	상호(명칭)	성명(대표자)
	주소(사업장 소재지)	지정번호
재발급 사유		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1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 (민원실)	→	검토 및 결재	→	관리대상 기록	→	지정서 재발급
신청인		국립환경과학원		국립환경과학원		국립환경과학원		국립환경과학원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